

다대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회원선임의견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 4. 21.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4. 4. 21.
다. 상정일자 : 2004. 6. 21.(제1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상정의결)

2. 의안요지

- 제3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가 2004. 7. 9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4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8인의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그간의 추진경과

- 2004. 7. 9일부로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04. 4. 2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다대포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위원선정 의뢰 공문(환경청소과-6640)을 접수한 바 있으며
- 지난 5. 6 사하구청장으로 하여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추천(의회사무국-576)토록 하였으며, 5. 29 다대1동장으로부터 추천자 11명에 대한 명단이 통보되었습니다.
- 지난 5. 31 김상근씨로부터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선출 문제점 보완 건이 인터넷 상으로 접수되었으며
- 6. 15 위 주민지원협의체 총무 정성옥씨로부터 위원선출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우리구 의회에 항의 방문한바 있고

○ 또한 6. 18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김상근씨의 진정서 접수에 이어 김주석 나대1동 사치위원장 등 주민대표 12명이 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문제와 관련 청장실을 방문한바 있으나 면담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진정서 및 항의방문과 청장 면담코자 하는 주요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 ① 나대소각장 지원협의체 주민대표위원 후보추천 철회
- ② 추천 및 선출에 관한사항은 주민대표에게 자율권 부여
- ③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위원선출
- ④ 김상섭의원을 주민지원협의체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인근 구의원추천
- ⑤ 주민자치위원회 안건 부의등 적법절차를 결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위원추천건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의회에 발송된 공문 반려 요망 등입니다.

□ 법률 검토보고

○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구성 등에 관하여는

- 소각장 1일처리 능력이 300톤미만일 경우 11인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에 따라 금번 우리구 의회에서 선정할 지원협의회위원은 8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명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과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재한 구의회 의원 1명이 되겠습니다.
- 지원협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 유고가 발생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 지원협의회의 위원의 구성 방법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환경상의 영향의 정도·주민의 수등 지역여건과 소각장에서 가까운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성이 강하고 대표성이 있는자 등 사회적 역할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정원 중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써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 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등입니다.

○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고 의결 정족수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라 임원의 구성 및 직무, 임원의 선출, 회의개최시기, 안건제출 및 처리결과 처리등 적법 절차에 따라 자율 운영토록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다대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선출과 관련

- 다대1동 주민간 분열과 갈등이 나날이 증폭되고 상충하는 이해집단간의 반목과 대립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며 이 고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걱정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의 합리적 구성과 원만한 운영을 희구하는 다수주민들의 열망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는 보다 신중하고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됨.

- 그리고 동에서 추천된 11명은 주민자치위원회등 공적단체로부터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정된 대표성있는 후보라고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대립하는 이해집단 간의 분란의 소지를 만들 개연성이 있고
- 의회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정된 주민대표 8명에 대한 적격성 여부만 심사 의결할 사항이지 11명중에서 8명을 선택하는 부분은 추천된 후보 개개인에 대한 면면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의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고, 폐촉법시행령 제18조 별표2의 제2항 후단 단서에 규정된 구청장과 구의회가 협의하여 구성한다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며
- 주민지원협의체위원 후보를 제한하지 않고 다대1동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히 제공하므로써 공명정대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양질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의 폭 확대와 참여 속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호혜평등의 정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 위 본건 다대소각장 지원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후보 추천 관련 공문은 다대1동으로 반려하여 주민총의 속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도깊은 검정과정을 득한 후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양질의 위원이 집행기관의 장인 구청장으로부터 추천될 수 있도록 조치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동의안 발의(최광렬위원)

-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위원 후보자 추천사항을 반려하자는 동의안 발의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후보자 추천사항 반려 동의안 의결